

- 2025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한시임기제7호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2025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시임기제7호 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1. 최종합격자 명단

| 분야 | 선발인원 | 최종합격인원 | 응시번호 |
|--------------|------|--------|---------|
| 한시임기제공무원(7호) | 1명 | 1명 | 25-108번 |

2.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가. 등록 기간 : '25. 4. 25.(금) ~ 4. 29(화)

나. 등록 방법

1) 등록 기간 내 제출서류 스캔(PDF파일) 후 e-mail 제출

※ e-mail 주소: rlaaldud0915@korea.kr

2) 이메일 제출 후 제출서류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

다. 제출서류

- 1) 기본증명서 1부(“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된 것으로 제출)
- 2)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국·공립 의료원 등에서 공무원용으로 발급
(검사 시 사진 2매 필요, 발급 기간 2일 정도 소요)
- 4)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cm × 4.5cm 규격(여권용) 사진]
- 5)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가.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나. 신체검사서 및 임용 결격사유 조회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임용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 02-6320-0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채용 신체검사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3.>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뒷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 | | |
|--------|-----------|--------|--------|-------|----------|
| ① 구 분 | ② 시험실시 기관 | ③ 응시직명 | ④ 응시번호 | ⑤ 성 명 | ⑧ 주민등록번호 |
| ⑥ 검사 시 | | | | | |
| ⑦ 재 사용 | | | | | |

사 진
(3.5cm × 4.5cm)

※ 암인 또는 계인

검 사 내 용

| 키 | cm | 체 중 | kg |
|------------------------|--------|--------------|--------|
| 허리둘레 | cm | 혈 압 | |
| (교정)시력 | 좌: () | 색 신 (색 각) | (교정)청력 |
| | 우: () | | 좌: () |
| 종 양 질 환 | | 이 비 인 후 질 환 | |
| 호흡 기 질 환 | | 심 혈 관 질 환 | |
| 소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 | 신장/비뇨기계질환 | |
| 내 분 비 질 환 | | 혈 액 질 환 | |
| 신 경 질 환 | | 피 부 질 환 | |
| 근골격계 질 환 | | 안 질 환 | |
| 정 신 질 환 | | 흉 부 X선 검사 | |
| 기 타 | |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 | |
|--------------------------------------|------------------|-------|--|
|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격 []판정보류 | 합격 사유 | |
|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 |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 |
|------|----------|
|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

210mm × 297mm [백상지(80g/m²)]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 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증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종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